#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상진의원 대표발의)

| 의 안<br>번 호 | 8752 |
|---|---|

발의연월일 : 2010. 6. 30.

발 의 자 : 신상진·김성수·원희목
이해봉·진 영·권영진
이종혁·오제세·황우여
유재중 의원(10인)

##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세계 최고수준의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음. 이는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국가경쟁력 저하, 세대 간 부양부담 문제 등 우리 미래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로서 정부는 물론 사회 각계의 총체적 대응을 결집할 수 있는 추진체계와 구심점 마련이 필요함.

이에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정부 뿐 아니라 국민의 인식과 사회각계의 동참이 필수이므로 민관협력 캠페인을 추진하기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 설치 근거를 둠으로써 인구문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증진하고 각계의 적극적 노력을 결집하는 구심점이 되도록 함. 더불어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제정하고 정부포상을 시행하여 사회 각계의

노력을 격려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 캠페인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범국민 운동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나.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지정(안 제30조의3 신설)

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과 노력을 유도하고, 그 공로를 치하하기 위하여 상훈법에 의거한 훈장·포장과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표창 등을 수여하고자 함(안 제30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범국민 운동본부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 캠페인을 추진하기 위하여 범국민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동본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동본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인구의 날) 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경제·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4(정부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개선에 관한 각계각층의 관심과 노력을 유도하고, 그 공로를 치하하기 위하여 상훈법에 의한 서훈과 정부표창규정 등에 의한 표창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훈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자와 기관은 포상금 등 부상을 받을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신 설> | 제30조의2(범국민 운동본부의 설치)<br>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 캠페인을 추진하기 위하여 범국민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br>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동본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br>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동본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신 설> | 제30조의3(인구의 날) 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경제·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한다.<br>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 |
|---|---|
| <신 설> | 제30조의4(정부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개선에 관한 각계각층의 관심과 노력을 유도하고, 그 공로를 치하하기 위하여 상훈법에 의한 서훈과 정부표창규정 등에 의한 표창을 실시하여야 한다.<br>② 훈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자와 기관은 포상금 등 부상을 받을 수 있다.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운동본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0조의2 신설), 정부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30조의4 신설).

##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함.

## 3. 미첨부 사유

개정안은 재량적 지출에 해당하며 운동본부의 설치와 운영, 정부포상에 관한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모법만 가지고는 사실상 추계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함.

## 4. 작성자

신상진 의원실 이상태 비서관(02-788-2340)